

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

■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방법

서류제출 기한	2022년 11월 05일(토) ~ 11월 11일(금) 17시 도착분까지 (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 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)
제출 방법	사전 방문 예약 신청 후 견본주택 방문접수
견본주택 위치	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2358 (대표번호 : 042-541-1009)
유의사항	· 기한 내에 아래 자격서류를 발급하시어 견본주택 방문 후,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·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점을 취소하며,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■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출 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 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구비 서류	○		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	본인	당사 견본주택 비치
	○		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	본인	인감증명서(본인 발급용), 본인 직접 신청 시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(용도: 주택공급신청용)
	○		신분증	본인	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※ 재외동포: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/ 외국인: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본인	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본인	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 사항 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"상세"로 발급(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)
	○		청약통장순위(가입) 확인서	본인	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(가입)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(가입) 확인서 발급(단, 국가유공자, 장애인, 이주대책 대상자는 제외) 인터넷청약(청약Home)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배우자	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랍니다)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직계존속	미혼, 이혼, 사별, 단독세대,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경우
	○		복무확인서	본인	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(10년 이상 군 복무기간 명시)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중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한 경우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*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지역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주민번호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
	○		단신부임 입증서류	본인	·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당첨자(청약신청자)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 (본인만)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- 국내기업 ·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: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-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, 근로 관련 서류, 취업, 사업비자 발급내역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
	○		출입국사실증명서	직계존·비속	· 피부양 직계존·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및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* 기록대조일: 생년월일-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- 30세 미만 미혼 자녀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- 30세 이상 미혼 자녀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*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 가족에서 제외[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사항]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피부양 직계존속	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(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)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자녀	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/자녀	본인의 주민등록표 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재혼 · 이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
	○	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)제출 (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확인 가능해야 합니다)
	○	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입양의 경우
	○	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	본인 또는 배우자	당사 견본주택에 비치
○		한부모가족증명서	본인	여성가족부의 "한부모가족 지원법"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	
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/자녀	본인: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. 성명,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 자녀: 만 18세 이상의 미혼의 직계비속 확인이 필요한 경우. 성명,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	
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청약자	※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합니다 용도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), '본인 발급분'에 한합니다 단,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
	○		위임장	청약자	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
	○		대리인 신분증, 인장	대리인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 ※ 재외동포: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/ 외국인: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

※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10.14(금)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전체)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.
 ※ 주민등록표 등 · 초본 발급 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 ※ 특별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(검증)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 등 ·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 ※ 상기 서류 외 당첨자 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